

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보 도 자 료 | | | 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 |
| | 보도 | 2018.1.22.(월) 조간 | 배포 | 2018.1.19.(금) |
| 책 임 자 |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광(02-2100-2950) | 담 당 자 | 김 성 진 사무관 (02-2100-2951) | |
|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 | | 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 | |
| |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박 민 우(02-2100-2650) | | 송 병 관 사무관 (02-2100-2652) | |
| |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 | | 양 재 훈 사무관 (02-2100-2993) | |
| |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 | | 권 기 순 사무관 (02-2100-2963) | |
| |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 일 용(02-3145-8350) | | 김 성 우 부국장 (02-3145-8360) | |
| |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종 수(02-3145-7460) | | 박 진 해 팀 장 (02-3145-7242) | |
| |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장 강 전(02-3145-7010) | | 김 명 철 팀 장 (02-3145-7022) | |
| |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6770) | | 송 평 순 팀 장 (02-3145-6773) | |
| |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 | | 정 용 걸 팀 장 (02-3145-7447) | |
| | 한국은행 은행분석팀장 박 완 근(02-750-6718) | | 김 관 희 과 장 (02-750-6766) | |

제 목 :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

-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

- ①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해 고위험주담대(LTV 60% ↑) 자본 규제부담 상향, 예대율 산정시 가계·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(±15%)
- ②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,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(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) 도입
- ③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, 건전성 분류 및 대손 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마련

➔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

I

개 요

- '18.1.19일(금) 11:00,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「자본규제 등 개편 TF*」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

* '17.8월, 금융위·금감원·한국은행 및 유관 연구기관 공동으로 TF 발족

- 금번 TF에서는 지난 4개월간 총 20여 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·확정하였음

※ 「자본규제 등 개편 TF」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'18.1.19.(금) 11:0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
 - (금융위) 부위원장, 금융정책국장, 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중소금융과장 등
 - (금감원) 부원장보, 은행·보험·금투·저축은행·상호여전 담당 국장
 - (한국은행) 부총재보
 - (연구기관) 금융연구원·보험연구원·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

II

부위원장 모두발언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,

-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'생산적 자금중개 기능'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,
-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
 - 자본규제 등 '자금중개 유인체계'가 올바르게 설계되고, 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

- 아울러,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함

- ① 먼저,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·보완하였음

- 특히,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·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'균형추'를 세우고,
 - 쏠 금융업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음
- ②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, 거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도 강구하였음
- ③ 생산적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·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
- 아울러,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'유인체계 본연의 취지'도 충분히 감안하였음을 언급함
- 자본규제가 일률적인 자금배분의 잣대는 아닌 만큼, 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없이 "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(Nudge)"할 수 있도록 적정 규제수준을 모색하였음
- 이어, 자본규제 개편안의 '3대 추진과제'를 간략히 설명하고,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음
- 개편안 시행시,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,
 -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,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되고, 금융시스템의 안정성·신뢰성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 - 아울러, 발표 이후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되,
 - 개별 금융회사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, 규정개정 과정 등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함

Ⅲ

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

◆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, 생산·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

3대 추진과제

- 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**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**
- ② 가계·부동산 등 **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**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(완충자본 적립), 영업규제 등 도입
- ③ **기업금융 활성화**를 위해 자본규제, 자산건전성 분류,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**인센티브 강구**

< 금융업권별 세부과제(요약) >

| | 가계·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| 편중리스크 제어·관리 |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|
|------|---|--|---|
| 은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예대율 산정개선 ✓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가계부문 CCyB 도입 ✓ 리스크관리실태 평가(필라2)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구조조정기업 건전성분류 합리화 ✓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등 |
| 금융투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정비·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중기특화 증권사 투융자 부담 완화 ✓ 코스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|
| 중소금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상호금융 기업대출 충당금 완화 ✓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합리화 |
| 보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등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기업상환능력에 맞춰 위험도 차등 |

1. 가계·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

① **(고위험 주담대)** 은행·저축은행·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

①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하여,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(60% 초과)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*

* (예) 은행·저축은행 : 위험가중치 현행 35%~50% → 70%로 상향
 보험 : 위험계수 현행 2.8% → 5.6%로 상향

② 은행권에 준하여 저축은행·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*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

* 만기·거치기간 연장(대환 포함)시 원금상환비율 10%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, 위험가중치 등을 상향 조정(현재 은행권은 70% 적용 중)

② **(은행 예대율)** 예대율 산정시, 가계-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(±15%)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

| 현행 예대율 | 가중치 부여 예대율 |
|--|---|
| $\frac{\text{원화대출금}}{\text{원화예수금}} \leq 100\%$ | $\frac{(\text{가계대출금} \times 1.15) + (\text{기업대출금} \times 0.85)}{\text{원화예수금}} \leq 100\%$ |

○ 당초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'정책적 목적'을 위해 도입('12.7월)된 바,

- 현행 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,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예대율을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·운용

○ 기업대출 유인 제고,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 수준은 ±15%*로 하되,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

* (가중치 ±15%)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98.1% → 99.6%로 상승,
 (가중치 ±20%)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100.1%로 규제비율 초과

- 아울러, 시행 前 유예기간(예:6개월)을 부여하고,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(인터넷전문은행)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적극 반영

※ 예대율 개선 관련 TF 논의내용

- TF 논의과정에서 현행 예대율 규제가 금년 도입되는 바젤3 유동성 규제인 '순안정자금조달비율*(NSFR)'과 중복된다는 지적 등도 제기되었으나,
 - * Net Stable Funding Ratio = 가용안정자금(부채·자본) / 필요안정자금(자산) → 장기간 필요한 자금 대비 장기간 안정적 자금을 보유토록 유도하는 중장기 유동성비율
- 자금조달의 질적 측면 관리(시장성 수신 제외), 과도한 대출증가 억제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, 예대율 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
- 다만,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, 중장기적으로는 예대율 규제를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

3] (증권사 부동산 관련 투자)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·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

① (부동산 대출)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될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자본부담(위험액) 상향

- * [현행]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(0%~32%) → [개선] 장기 부동산 대출(PF 등)에 대해서는 현행 위험값에 일정비율을 가산

② (부동산 펀드)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*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

- * (예)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 매각·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

※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,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%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

2. 편중리스크 제어·관리

1] (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)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

※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,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,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(구성의 오류)

-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,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

- 가계부채 증가속도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'적립 비율'을 결정하면,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
 - * (예)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% 자본적립 결정 →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 비중이 50%인 은행은 0.5%(1% X 0.5) 추가 자본적립(보통주) 필요

※ **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(Sectoral CCyB) 도입안** (예시)

- ① **(적립판단지표)** 'GDP 대비 가계신용갭'을 주지표로 사용하고,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갭,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
- ② **(적립비율 결정)**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,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가 0%~2.5% 범위 내에서 결정
- ③ **(은행별 적립비율)** 금융위가 정한 적립비율에 개별은행별 가계부문 신용비중(익스포저)을 곱하여 **최종 추가 적립비율(보통주) 산출**
- ④ **(적립시기)**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결정시, **최대 1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**

-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, 이익배당,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 확보

② **(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 강화)**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(필라2)시 '가계부문 편중리스크' 평가를 신설

※ [필라2]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·관리체제를 구축·운영하고, 감독당국은 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계획 제출, MOU 체결 등 조치

-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(규모·속도)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계량·비계량 평가지표를 추가·보완*

* (예) 전체 신용대비 가계신용 비중,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절차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수행 여부, 가계대출 편중도 관리수행 여부 등

③ **(증권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)**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,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

- (종합금융투자사업자) 동일인 신용공여한도(자기자본의 25%) 산정시, 현행 대출·어음할인 뿐 아니라 '채무보증'도 추가

- (일반 증권사)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신설

3.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

① (기업구조조정)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-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, 기존대출 보다 자산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* 마련

* 기업에 대한 다른 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

② (중소기업 신용대출) 담보·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* 부여

* 은행 경영실태평가지, 경영관리 부문에 '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' 항목을 신설하고, 별도의 평가 가중치(예 :5%) 신설

③ (중기특화 증권사)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·벤처기업에 투·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

① (투자) 중소·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,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*을 면제

*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%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, 개별위험값(4%~20%)의 일정 비율(50%~200%)을 추가로 가산

② (융자)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, 대출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

* [현행]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→ [개선]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(위험값 0%~32%)에 반영

※ 이와 함께,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 투자*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(전체 증권사 해당사항)

* [현행] 개별위험값 6%~12% 적용 (코넥스 동일) → [개선] 5%~10%

4 [기업대출 총당금 등]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·상호 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 등을 합리화

1 (상호금융) 은행·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총당금 부담을 경감*하되,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

* [적립기준] 정상 1% → 0.85%, 요주의 10% → 7%, 회수의문 55% → 50%

2 (저축은행) 여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를 합리화*('18년부터 총당금 적립부담 강화 시행)

* 저축은행 요주의 여신 기준(부실징후 기업여신) 중 차입금 과다 기준 및 정상으로 상향 분류 가능요건 등을 개선

IV 향후 추진계획

□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,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(규정개정 착수, 1분기~)

○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,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

※ 세부과제별 추진일정(예시)

- ① (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상향) 금융회사별 영향,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상향(예 : 2년) 검토
- ② (예대출 산정방식 개선)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,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(예 : 6개월) 부여
- ③ (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) 세부모형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관계기관 협업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('19년 시행 목표)

□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, 혁신모험펀드 조성,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, 동산담보·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

☞ '자본규제 개편방안'의 상세내용은 <별첨>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 | <p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 | 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 |  <p>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</p>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참고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

- ◆ 금융업권별 자본비율(BIS, NCR, RBC 비율 등)은 급격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소 하락
- ◆ 계량화 가능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**최대 40조원 내외**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

